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집합투자업자(<http://www.timefolio.co.kr>)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 2024.09.26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10.30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제한없음]
[모집(매출) 총액]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개시(2024년 10월 30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 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7.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본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ETF로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인투자자는 ETF를 보유하게 되면 당해 ETF가 상장된 거래소(예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ETF가 상장된 거래소에서 ETF의 거래가 부족한 경우 투자자께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 및 수량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작성기준일:2024.09.26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펀드코드 : EF927]
1	2	3	4	5	6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식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주식가격 하락위험 , 비교지수의 변화를 일정수준 초과하도록 운용함에 따른 액티브ETF 투자위험 및 상관계수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 투자신탁과 비교지수간의 1년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와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주식 운용 역량이 발휘되는 포트폴리오를 혼합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 비교지수 : 코리아밸류업*100%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투자비용	명칭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 (단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지정참가 회사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80	0.05	1.59	0.80	82	167	255	444	98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	-	-	-	-	-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주1) 비교지수 : 코리아밸류업*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단위:개)	운용규모 (단위:억원)	연평균		연평균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김남호	1986	부장	11	4,068	28.28	22.55	23.29	16.96	9년 5개월	
	부책임 김남의	1984	부장	11	4,068	28.28	22.55	23.29	16.96	16년 8개월	
부책임 이정옥	1981	부장	11	4,068	28.28	22.55	23.29	16.96	11년 4개월		

	부책임 배현주	1993	과장	4	2,355	33.90	-	23.29	16.96	2년 0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에 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 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특정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리아벨류업 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수에 따라 주식의 비중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시장국면 별로 코리아벨류업 지수와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ETF 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 “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ETF는 제 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경우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매입 방법	개인투자자 :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개인투자자 :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imefolio.co.kr)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 (ETF)의 보유 기간과세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시행(2010년 7월 1일)에 따라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2010년 7월 1일 부터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금액, ETF 매수가격 등의 적용기준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 투자업자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번호: 02-533-894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imefolio.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발생일	2024년 10월 30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imefolio.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timefolio.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imefolio.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imefolio.co.kr)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F927

2. 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상장지수투자신탁(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가능)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제한없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판매)기간	2024년 10월 30일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판매)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imefolio.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1) 상장 증권시장 : 한국거래소

(2) 상장일 :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예정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요건

- 규모요건 :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 좌 이상일 것
 -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 자산의 구성요건
- ①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가 직접 납부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투자자가 납부한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납부가 가능한 경우
- ▶ 증권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100분의 95이상, 종목수를 기준으로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100분의 50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기초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전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 ▶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51조에 따라 매일 공고하는 자산구성내역에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이상 편입할 것
- ② 위의 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규정에서 정한 해당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수익증권의 상장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 투자 증권이 환금성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상장요건 및 상장폐지요건 등은 이 투자설명서의 작성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의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타임폴리오 TIMEFOLIO 코리아밸류업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F92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짜	주요내용
2024.10.30	효력발생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16층 (우 07321) ☎02-533-8940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 수 (단위:개)	운용 자산 규모 (단위: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남호	1986	부장	11	4,068	28.28	22.55	23.29	16.96	9년 5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수	운용규모 (억원)
- 한화자산운용 ETF파트, ETF 전략팀, ETF 운용팀 (2014.12~2021.01)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 (2021.01~현재)	-	-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 수 (단위:개)	운용 자산 규모 (단위: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남익	1984	부장	11	4,068	28.28	22.55	23.29	16.96	16년 8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펀드수				
-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 (2007.06~2016.07)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 (2017.01~2021.01)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 (2021.02 ~현재)					-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 수 (단위:개)	운용 자산규모 (단위: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이정욱	1981	부장	11	4,068	28.28	22.55	23.29	16.96	11년 4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펀드수				
-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07.12 ~ 2012.09) - (주) 믿음 (2012.09 ~ 2013.05) - 대우증권 홍콩법인 (2013.06 ~ 2014.06)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트레이딩팀, 주식운용본부, ETF본부 (2014.07~현재)					-				-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운용경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 수 (단위:개)	운용 자산규모 (단위: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배현주	1993	과장	4	2,355	33.90	-	23.29	16.96	2년 0개월
이력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펀드수				
- 블랙록 재무팀(2015.08 ~ 2020.02) -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2021.06 ~ 2022.09)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 (2022.10~현재)					-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이며 모자형 구조의 펀드의 경우 모펀드만을 대상으로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5) “운용경력”은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1) 책임운용전문인력

책임 운용역	운용 기간
-	-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부책임 운용역	운용 기간
-	-

주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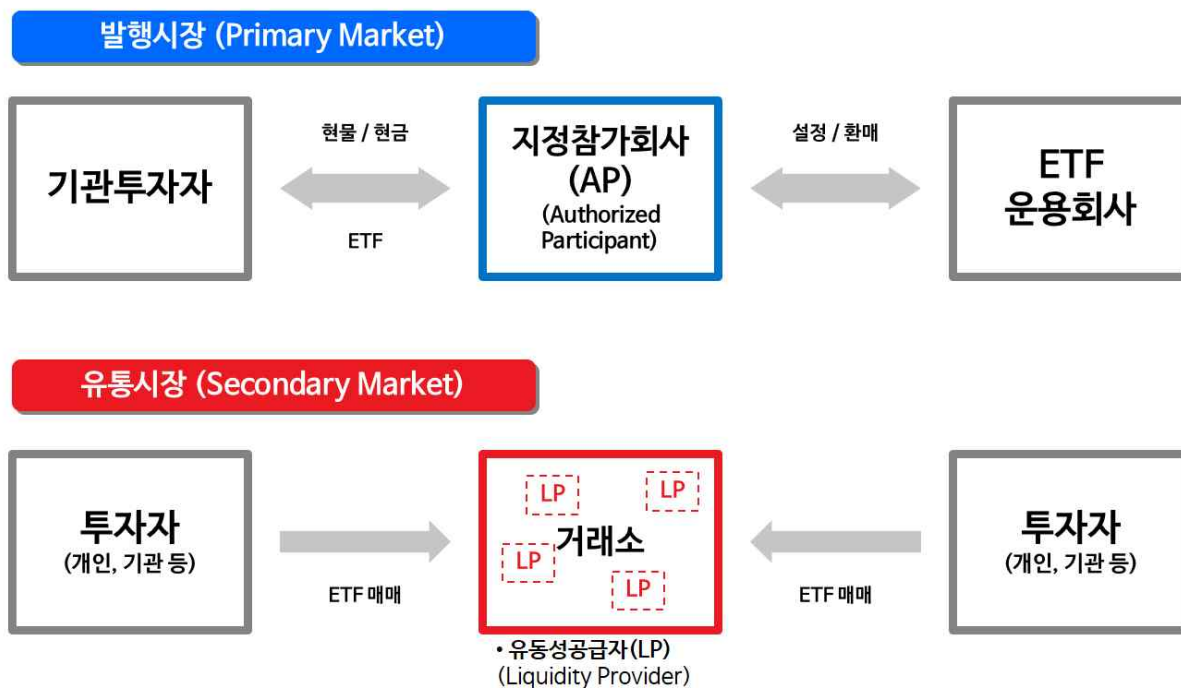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모자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종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전환형 구조] : 해당사항 없음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 비교지수가 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지수에 포함된 종목의 매매가능성 및 기타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용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비교지수로서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된 다른 지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목적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 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 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한다)
②	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 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 투자증권 등”이라한다)
③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④	증권의 대여 ^{주1)}	보유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⑤	증권의 차입 ^{주2)}	자산총액의 20% 이하	①~②에 의한 증권차입
⑥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⑦	신탁업자와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⑧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⑨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⑩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②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①~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③~⑥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1) 증권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

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제외
①	이해 관계인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하는 집 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 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 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 초 설 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동일 종목투자 (예외)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 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 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 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 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 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나.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 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 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③	집합 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 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최 초 설 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 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지분 증권총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 초 설 정 일 로 부 터 1개월간
⑥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②~⑤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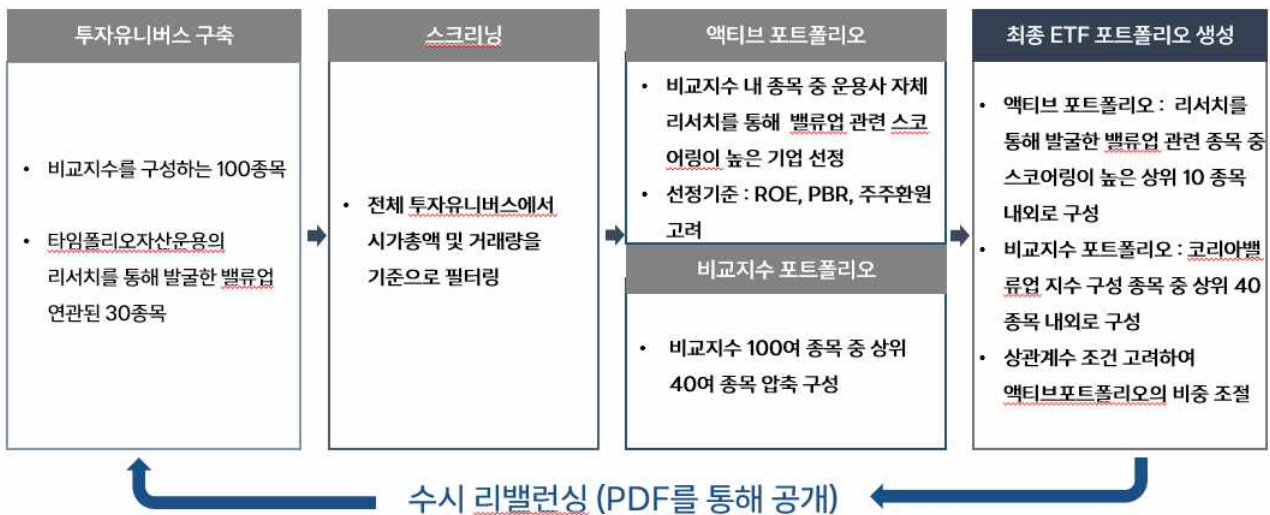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한국거래소(KRX)가 발표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주식에 투자할 계획이며, 주로 중장기 주가 상승목표 도입, 자사주 소각, 배당금 지급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국내 핵심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3) 투자신탁과 비교지수간의 1년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비교지수의 성과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와 비교지수 구성 종목 내에서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리서치를 통해 선별한 종목들로 구성된 액티브포트폴리오를 배합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 세부 투자전략



*상기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경우 향후 코리아밸류업 지수에 추가 편입될 수 있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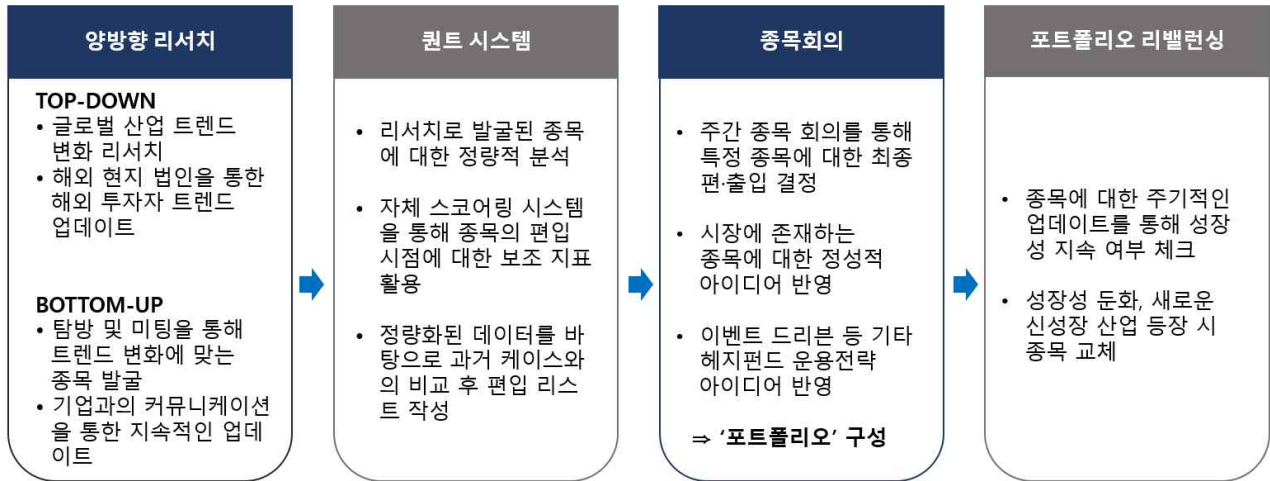
1) 액티브 포트폴리오 : 당사 주식운용본부 멀티매니저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밸류업 관련 전반의 세부 섹터 및 종목에 대한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스코어링이 높은 상위 10종목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2)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 :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100여 종목 중 상위 40종목 내외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다.

3)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와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75:25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상관계수의 추이를 감안 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멀티매니저 포트폴리오는 개별 운용역 마다의 종목과 섹터 등에 대한 판단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이며, 당사의 TMS(Timefolio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구현됩니다.



*TMS(Timefolio Management System)는 Multi-Manager System(각각 독립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 매니저들의 판단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운용체계)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3) 위험관리

액티브상장지수펀드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 ▶ 상기 액티브 포트폴리오는 백테스트를 통해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와의 배합이 사전적으로 상관 계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 ▶ 사후적으로는 1년 상관계수값 자체의 단기와 중기추세를 감안하여, 단기추세가 중기추세를 하향 돌파하였을 경우, 비교지수 추종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합비율을 증가시킵니다.

나. 비교지수

※ 비교지수: 코리아밸류업 *100%

상기 비교지수는 향후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지수 소개>

- 비교지수 : 코리아 밸류업 지수 (Korea Value-up Index)
- 산출기관: 한국거래소(KRX)
- 지수개요: 시가총액, 거래대금 등 규모 요건 이외에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요건을 충족하는 대표기업들로 구성
- 유니버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종목(보통주)
- 선정 기준: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5단계 스크리닝'을 통한 종목선별



5단계 스크 리닝	①시장대표성	· 유가+코스닥 시총 400위 이내 (시총 약 5,000억원 이상, 누적시총 90% 수준)
	②수익성	· ① 최근 2년 연속 적자기업 및 ② 최근 2년 손익 합산시 적자인 기업은 제외
	③주주환원	· 최근 2년 연속 “배당 or 자사주 소각” 실시
	④시장평가	· 최근 2년 평균 PBR기준 ① 산업군별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 또는 ② 전체 순위비율 상위 50% 이내
	⑤자본효율성	· 최근 2년 평균 ROE기준, 산업군별로 순위비율 상위기업 100종목 선정
특례요건		· 밸류업 초기 공시기업은 최소요건(수익성/시총/유동성 등) 충족시 최우선적으로 편입

- 지수구성종목 : 100종목
- 지수구성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개별종목의 지수내 비중을 15%로 제한/ 비유동주식수는 지수산출시 제외)
- 지수 변경: 연 1회 (매년 6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

- 최초기준일: 2024년 1월 2일 (1,000pt)

- 일반적으로 ETF는 지수 수익률 추종을 위하여 “기초지수”를 선정하며 기초지수 구성종목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반면, 지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는 성과 비교를 위하여 “비교지수”를 선정하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합니다. 따라서, 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는 ETF의 “기초지수”와 지수 수익률 초과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의 “비교지수”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한국거래소(KRX)가 발표하는 코리아벨류업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 중 중장기 주가 상승목표 도입, 자사주 소각, 배당금 지급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라.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본 ETF는 아래의 두가지 방향으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항시적인 대응 제도를 가지고 있어, 비상조치계획을 이에 갈음합니다.

<ETF 자체의 유동성 관리>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본 ETF의 유동성공급자인 복수 이상의 증권회사는 ETF의 실시간 기준가를 중심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며, 매수매도 호가의 간격도 상장심사신청서에 기대된 신고스프레드(0.5%) 이내로 관리합니다.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매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F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관리>

본 ETF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가 총액과 거래량이 일정수준 이상 (예: 시가총액 4,000억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인 종목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한편, ETF의 환매는 발행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환매 청구시 주식을 유동화하여 지급하지 않고 PDF의 내역에 해당하는 주식 (소량의 현금 포함)으로 지급하므로 환매청구에 의한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변동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될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주식 등 증권의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에 따른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액티브 ETF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및 상관계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적오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 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인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과의 괴리 가능성	이 투자신탁은 특정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운용전략을 보유하고 있고,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서 일부 투자기간에 대해서는 일부 업종 및 소수 종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리아밸류업 지수의 업종 구성 및 종목 비중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운용과정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 수에 따라 주식의 비중이 조절됩니다. 따라서, 시장 국면 별로 코리아밸류업 지수와 수익률 괴리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 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 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상장폐지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증권시장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장폐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에 매도 청산하거나, 상장폐지 시점의 NAV기준으로 분배받게 됩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 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 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 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및 매매·평가손익, 채권투자시 매매·평가손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한국거래소가 산출·발표하는 ‘코리아밸류업*100%’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하며,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식형 펀드로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 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의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할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재산정될 예정이며, 이 때 투자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이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6등급 중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위험등급 분류는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	매우 높은 위험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다소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보통 위험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낮은 위험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매우 낮은 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상품(Commodity),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

(2)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위험등급	변경사유

(3) 수익률 변동성 기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97.5% VaR
1	매우 높은 위험	50% 초과

2	높은 위험	50% 이하
3	다소 높은 위험	30% 이하
4	보통 위험	20% 이하
5	낮은 위험	10% 이하
6	매우 낮은 위험	1% 이하

-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 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 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97.5% VaR”은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하며,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신뢰구간 97.5%)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매입에 의한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수령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으며, 설정청구는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설정단위 (Creation Unit)

-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3) 정산금액 등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① 정산금액 :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말합니다.
- ② 정산일 : 투자자는 상기 정산금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설정요청일에 발생하게 되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내역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포트폴리오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작성시 반영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수익증권의 설정

-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부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받은 납부금등을 설정 단위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수익증권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당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투자자가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함)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함)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부(이하 “대납현금”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 현금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투자증권을 매매(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함)하는 등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 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 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이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의 매매를 한 경우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공고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수표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의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영업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① 설정청구일 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설정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기 위한 자산 (납부금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납부금등을 매매하여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금 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 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예약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③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④ 설정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 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의 입고를 설정일(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수익증권의 설정절차

구분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수익자 통보	신탁회사로 납부금 등 이체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이체)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 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설정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증권시장에 상장신청	수익증권 발행 (한국예탁결제원 일괄예탁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 확인

나. 환매

(1) 증권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익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수익증권 매도하는 방법(투자신탁의 환매청구)

- 환매 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수령합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영업일 오후 4시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

매를 청구하는 경우 당해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당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간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당해 취소신청은 그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그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지정 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함)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 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⑨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에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유가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⑫ 제11항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 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 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 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 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 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개시하는 날의 직전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경우에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를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일자별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① 환매청구일 전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② 환매청구일 (T일)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을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합니다.

③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환매일(T+2)에 결제 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④ 환매일 (T+2일)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고, 수익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구분	(T-1일)	(T일)	(T+1일)	(T+2일)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수익자 통보	수익자계좌에서 수익증권 인출 및 환매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 구성내역 통보 (증권시장 등)	환매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증권시장에 변경 상장신청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환매 자산이체(한국예탁결제 원의 계좌이체에 의한 이체) 및 내역확인

(4)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중도환매 가능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O
환매수수료 (중도환매 시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5)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시 자산의 이체방법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해지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해지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수익증권의 설정 또는 해지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해당사항 없음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timefolio.co.kr)·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장부가액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①~⑦외의 자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지정참가회사 또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하며, 작성 기준일까지의 회계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반기 말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종류

국내자산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ELW/ELS 거래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등

해외자산 : 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직전 회계연도 :]

구분	금액(직전 회계 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파생상품매매수수료(과세)	
파생매매수수료(비과세)	
대차중개수수료(과세)	

주3) "총보수·비용"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포함)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피투자 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 및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2	167	255	444	988

위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신탁 관련 비용

- ①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②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③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④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⑤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 ⑥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⑦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⑧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수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 ⑨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수익증권이 상장관련 비용
- 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지급기준일 : 매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2)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3)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4)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 3)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24년 10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 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③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 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

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액티브상장지수펀드 등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 된 것이며 투자자 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 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 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과표 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 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과표 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 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 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투자신탁 자산총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	-	-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	-	-
운용자산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실물자산			
현금 및 예치금			
기타운용자산			
기타자산			
자산총계			
운용부채			
기타부채			
부채총계			
원본			
수익조정금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	-	-
운용수익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매/평가차익(손)			
기타수익 ^(주2)			
운용비용			
관련회사보수			
매매수수료			
기타비용 ^(주3)			
당기순이익			

매매회전율 ^(주1)			
-----------------------	--	--	--

(주1)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1기 0 천원 발생)

(주3)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1기 0 천원 발생)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주,%)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

(주1)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는 자료입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	-	-	-	-	-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	-	-	-	-	-
부동산	-	-	-	-	-	-
장내파생상품	-	-	-	-	-	-
장외파생상품	-	-	-	-	-	-
합 계	-	-	-	-	-	-

(주1)거래비용은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생략 가능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1)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코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 3)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 2024.00.00, 단위:%)

구분	설정일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	-	-	-	-
투자신탁	-	-	-	-	-	-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	-	-	-	-

(주1)비교지수: 코리아밸류업 *100%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설정이후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설정일 이후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최근n년 수익률의 경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n년 미만일 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수익률 (기준일 : 2024.00.00, 단위:%)

구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	-	-	-	-
투자신탁	-	-	-	-	-
비교지수	-	-	-	-	-

(주1) 비교지수: 코리아밸류업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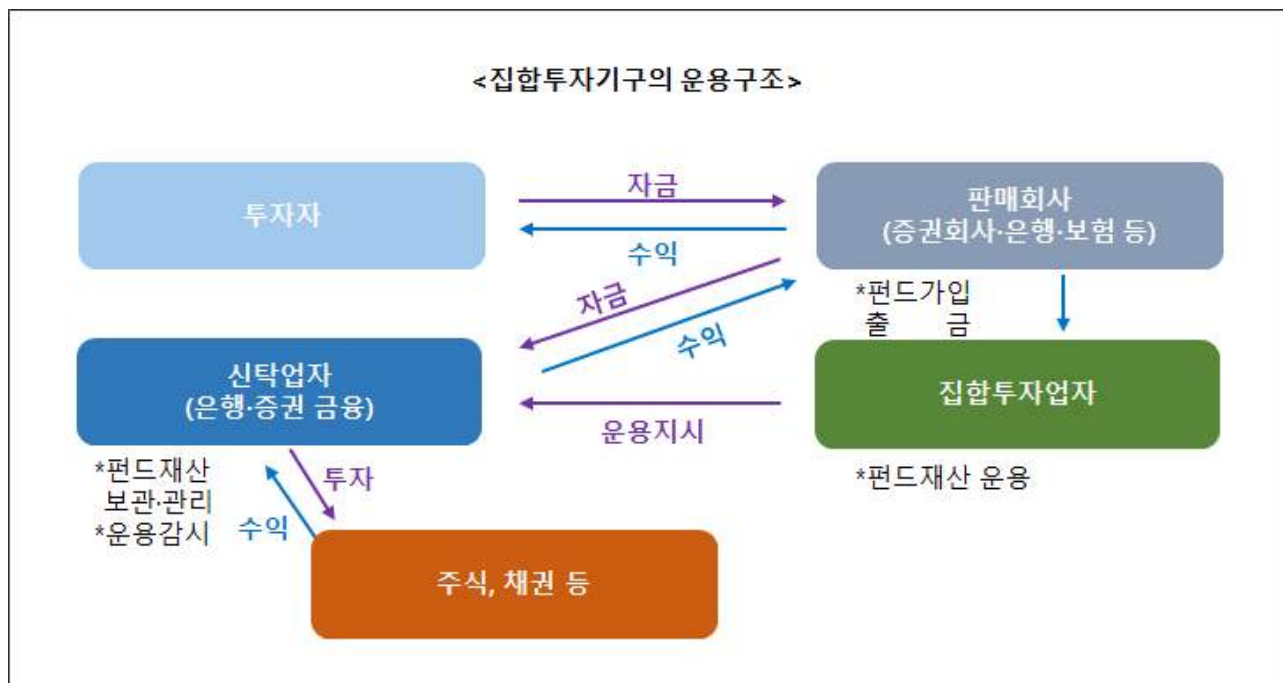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인 “기간수익률”을 말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타임폴리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16층 (여의도동) 02-533-8940
홈페이지 주소	www.timefolio.co.kr
자본총계	1,671억원 (2024년 3월 31일 기준)
주요주주 현황	황 성 환 外
회사연혁	2006-05-15 회사설립(주)타임폴리오앤컴퍼니(자본금 3억, 대표이사 황성환) 2008-07-27 상호변경(주)타임폴리오투자자문 2008-07-2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등록번호 08-03-329)

	2016-04-29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타임폴리오자산운용)
	2016-07-15	외국환 업무취급기관등록
	2018-08-07	싱가포르 해외법인 설립 (SGD 4,000,000) - TIMEFOLIO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2019-02-08	싱가포르 해외법인 자산운용업 인가 취득
	2019-07-24	증권펀드집합투자업 (3-11-1) 인가 취득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삼성증권 (자본시장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자) ※ 삼성증권은 당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자본시장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자)입니다.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과목	2024.03.31	2023.03.31	과목	2023.04.01.~ 2024.03.31	2022.04.01.~ 2023.03.31
현금 및 예치금	11,610,111,168	1,183,100,794	영업수익	72,932,832,495	52,071,418,508
유가증권	159,699,230,028	147,896,785,989	영업비용	46,441,732,250	39,190,346,148
유형자산	22,786,150,962	12,120,234,199	영업이익	26,491,100,245	12,881,072,360
기타자산	15,999,609,143	13,472,373,085	영업외수익	9,083,662,703	18,765,705,276

자 산 총 계	210,095,101,301	174,672,494,067	영업외비용	5,766,467,948	20,056,419,633
차입부채	6,852,699,404	6,487,549,065	법인세차감전이익	29,808,295,000	11,590,358,003
기타부채	36,120,625,508	20,566,921,306	당기순이익	24,239,467,605	7,897,315,679
부 채 총 계	42,973,324,912	27,054,470,371			
자본금	5,410,220,000	5,410,220,000			
자본잉여금	7,805,917,040	7,774,257,080			
기타자본	(12,658,879,156)	(12,320,849,784)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166,564,518,505	146,754,396,400			
자 본 총 계	167,121,776,389	147,618,023,696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9.26. 순자산 기준 / 단위: 억원,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종류	증권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기타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재간접							
수탁고	7,312	0	0	0	4,465	0	0	0	0	20,770	0	32,54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해당사항 없음

2)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 하나은행 (☎ 1588-1111)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ebhana.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일반사무관리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44층 (☎ 02-769-7855)
홈페이지 참조	https://korfp.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채권평가회사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88 삼환빌딩 4층 (☎ 02-2251-13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reaap.com/
회 사 명	키스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4층 (☎ 02-3215-14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bond.co.kr
회 사 명	(주)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 02-721-5300)
홈페이지 참조	http://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1)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3)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는 법 제190조 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신탁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1 이상일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3)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1)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⑥ 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⑨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⑩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 요청한 수익자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3) 상기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 가)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기준으로 신탁계약서 제37조에 따른 보수율로 6개월간 계산한 금액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 나)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급한 비용(법률자문, 사업성평가, 금융자문 등)
- 다) 가) 및 나)목과는 별도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시행령 제225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 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 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2)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3)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4)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5)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 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③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별 거래 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②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③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①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⑤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⑦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변경 또는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써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⑪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 자 증 권 거 래 및 장내 파생상 품 거래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거래 등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 체결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4. 세미나, 기업탐방, NDR, IR, AI 딜 등 • 회사는 투자중개업자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분기단위로 수립하고 적정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투자중개업자에 매매를 위탁한다. • 투자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 합니다.

[붙임] 용어정리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 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식형펀드	일반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채권형펀드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펀드로서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식혼합/채권혼합형 펀드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서, 주식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주식혼합형, 주식에 최대투자 가능비율이 50% 미만인 펀드를 채권혼합형이라고 말합니다.
상장지수펀드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집합투자 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 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 매입 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당해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능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 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위험평가액	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위험평가액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위험평가액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신탁계약서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 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